

운 영 규 정 개 요

- **입소정원 : 80명**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및 비용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보호자)**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③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④ 입소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장기요양기관)의 시설생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 ⑦ 계약의 해지등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입소자가 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외박비용 산정기간 종료시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9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 진료 후 촉탁진료비 및 약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악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감염자나 감염위험자는 보호자안내 후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즉시 병원으로 전원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병원입원등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한다.